

제201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7. 6. 21.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崔 光 默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44호로 2017년 6월 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영등포구의회 의결 후 시행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폐교부지 매입을 통한 휴양소 조성의 건】

- 도시화로 인하여 폐교된 자매도시 내 학교를 매입하여 우리구 자체 휴양소를 확보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여가 선용 및 복리증진 향상에 기여

4.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계상 재산

재산표시			추정가액 (천원)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토지 소유자
지목	소 재 지	수량(m ²)				
토지 (학교 용지)	청양군 대치면 시전리 276	12,936	372,557	2017년 8월	폐교부지 매입을 통한 휴양소 조성	충청남도 교육감
건물		1,526.96	178,212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4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

6.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4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설치에 따른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임.

○ 위 안전과 관련하여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충남 청양군 대치면 시전리에 위치한 폐교를 매입하여, 자체 휴양시설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31억 9천9백만원으로서 전액 구비를 투입하여 폐교부지 12,936 m^2 , 지상2층 건물의 연면적 1,269,94 m^2 을 감정가 6억8천8백만원에 매입하고, 폐교된 건물을 리모델링 하여 야영장과 숙박시설 등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리모델링 개략공사비는 안전진단비 1천 9백만원, 설계비 8천6백만원, 감리비 3천5백만원, 공사비 23억 7천 1백만원으로 산출하여 제출 하였으나,

향후, 휴양시설의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대상 시설물 등의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비 변동이 예상되는 부분임.

○ 검토결과, 구청 주무부서의 자료와 타구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폐교부지 활용한 휴양시설은, 국민의 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폐교부지를 휴양소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5개 자치구에서는 운영적자로 나타남에 따라, 이용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측면에서 휴양소로 적합한 지, 주변의 자연환경, 교통 편의 및 접근성, 각종 편의시설 등을 고려한 것이 중요하며,

향후, 운영수익 확보를 위해, 전문가의 타당성용역,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 사전준비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타구의 사례 등 자료를 참고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

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议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 (공유재산 관리계획)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